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군포시)

□ 민원 제목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 평가항목에 대한 공정성 문제

□ 신청 원인

○ 민원신청 요지

- 신청인은 군포시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번호 x번으로 서류전형 접수를 하였고, 추후 특정 번호를 빼 나머지 연속된 응시번호가 1차 서류전형 시험에 합격한 사실에 관하여 민원 제기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번호 x번으로 응시하였으나,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 발표 후 응시번호 x번, xx번이 빠진 나머지 x번 ~ xx번의 연속된 응시번호가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격자 번호를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특정인을 빼고 합격자를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해당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기준의 기본항목은 ①군포시 거주기간, ②미성년 자녀유무 ③저소득층여부이며 가산점으로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①취업보호지원 ②사회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는 서류 접수시 제출한 자료(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정량화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임. '서류전형 합격자 응시번호가 x~xx번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부분은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의 결과로 성별이나 연령 등 심사기준과 무관한 요소는 어떠한 형태로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음.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군포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계획 공고를 13일간 시행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20xx. xx. xx.에 발표함.

1차 서류전형 시험 채용방법의 배점항목은 거주기간 최고점 10점, 미성년자녀유무 최고점 15점, 저소득층 해당시 5점(미해당시 3점)의 기준으로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두었으며, 추가 가산점을 취업 보호지원우대 최대 3점, 사회봉사활동실적 우대 최대 3점을 기준으로 하였음.

00000 업무 보조 지원으로 총 00명이 응시하였고, 선발예정인원 130퍼센트 이내 선발 및 최하위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기준에 따라서 00명의 응시자 중 00명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x ~ xx번 응시번호 중 1차 서류전형 시험은 x번과 xx번이 불합격하였음.

□ 관계법령 등

- 군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채용원칙) 및 제15조(채용공고)

□ 판단 및 결론

- 판단

- 동 채용에는 총 00명이 접수되었고 배점 항목은 ①군포시 거주기간, ②미성년 자녀유무 ③저소득층여부이며 가산점으로는 ①취업보호지원 ②사회봉사활동으로 조사되었음. 점수 부여 기준에 따라 각 배점 항목별 점수가 각 접수자별로 부여되어 종합점수가 집계되었고 이 종합점수 집계결과 0등에서 00등까지의 순위가 나왔으며 선발예정 인원 130퍼센트 이내 및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기준에 따라서 00명이 1차 합격하였는데 그 합격자 접수번호는 x번 ~xx번, xx번임이 확인됨.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군포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소환하여 질의하고, 성명 등 개인정보를 가린 서류전형 심사결과표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채용 과정상 위법 및 부당한 점은 확인하지 못함.

○ 결론

- 해당 채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